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46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0년 4월 3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G밸리 문화·복지센터” 건물 ('21. 2월 준공 예정) 內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IoT 기술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임대 공간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58번지 외 2필지
- 사용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허가면적 : (토지) 67.1㎡, (건물) 357.46㎡
- 허가기간 : ' 20.12.~ ' 25.12.(5년)

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운영하는 “IoT 기술지원센터”는 IoT(사물인터넷)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장비 지원, 무선 성능 검증, 품질개선 등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임.
-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IoT 기술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G밸리 내에 유치함으로써, “G밸리 일대를 IoT 기반의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육성” 하는 市 정책 사업에 기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2021년 준공예정인 G밸리 문화·복지센터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IoT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나. G밸리 문화·복지센터 개요

- G밸리 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노동자 지원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기존 가산문화센터와 그 인접부지를 통합 개발해 노동자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 센터는 지하 2층~지상 10층(연면적 6,017㎡) 규모로 건축 중이며,
 - ▷ 저렴한 임대 주거공간인 노동자기숙사, ▷ 청소년 쉼터, ▷ 무중력 지대(청년활동 지원 공간), ▷ 문화센터, ▷ IoT기술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운영될 계획임.
 - 당초 올 7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내년 2월로 연기되는 등 입주기업의 공간 이전과 운영예산 집행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G밸리 문화·복지센터 층별 운영계획>



① 도 전 속	② IoT기술 지원센터	③ 청소년 쉼터	④ 무중력지대	⑤ 문화센터 직장맘센터
경제정책실 6-10층 (2,373㎡)	경제정책실 4층 (351㎡)	평생교육국 1~5층 (682㎡)	청년청 1,2층 (571㎡)	여성가족정책실 2,3층 (309㎡)
◆ 근로자를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 및 창업공간(58실)	◆ G밸리 사물 인터넷 산업 지원	◆ 청소년 지원시설 제공 및 단기 숙박/학습/자립 지원 교육	◆ 청년 근로자 커뮤니티 및 휴게 공간 제공	◆ 퇴근 후 취미 활동 제공 및 직장맘 고충상담, 역량 강화 교육 등

※ 외부계단 및 G-DECK 시설 면적 제외

다. IoT 기술지원센터 현황

- IoT(1)기술지원센터(이하 “IoT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의

1) 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 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

- IoT센터의 주요 업무는 ▷사물인터넷 제품의 성능 검증과 품질 개선 등의 기술·장비 지원, ▷현장 컨설팅, ▷기술협력 네트워킹과 기술교육 지원 등임.

- 서울시와 진흥원은 2016년 G밸리 IoT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²⁾을 체결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개발 지원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IoT기술지원센터 제품 개발 지원 실적>

(단위 : 건)

연도	송도	가산	합계 (기업수)
2015	1,503	619	2,122 (262개사)
2016	1,416	648	2,064 (261개사)
2017	1,474	662	2,136 (280개사)
2018	1,563	743	2,306 (314개사)
2019	1,644	886	2,530 (365개사)

- 현재 과기부는 가산과 인천 송도 두 곳에서 운영 중인 IoT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가산센터를 폐쇄하고 송도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2) 서울시는 신축 중인 시설 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물인터넷 시험환경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감면하여 산정하기로 함(2016.12).

<IoT기술지원센터 개요>

구 분	IoT기술지원센터(송도)	IoT기술지원센터(가산)
개소일	- 2008. 6.	- 2011. 5. (KCA → '14. 7 NIPA 이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8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송도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 206호
시설 현황	- 건물 : 연면적 18,246㎡ [자가] - 장비 : 총 169대	- 건물 : 연면적 291㎡ [임대] - 장비 : 총 18대
기술 지원 분야	- 근거리통신(RFID/IoT, 전자파, NFC, WiFi, BT, LoRa 등) 기반 IoT 제품의 신뢰성 및 무선성능개선 등 기술 지원	- M2M통신(2G/3G/4G&LPWA 등) 기반 IoT 제품의 테스트환경 제공 및 통신 사업자 제품검수 지원

- 이에 진흥원은 양호한 교통 접근성과 5G 사물인터넷 기술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하여 G밸리 IoT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대와 관리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하였음.

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제2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기부재산의 기부자 등의 직접 사용,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자의 신축기간 중 부지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입주 예정인 IoT센터의 운영기관인 진흥원은 법 시행령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에 해당³⁾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함.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10.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현재 IoT센터의 주된 이용기업(전체 365개)이 서울(109개), 경기(145개)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G밸리를 사물인터넷 기술기반의 융·복합 제조업 중심의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의 존치가 필요함.
 - 특히, 진흥원이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사물인터넷 분야 장비제공, 연구개발과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통신망과 연동한 사물인터넷 제품의 검증·상용화 사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어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G밸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의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바 있음.
- 무상사용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1억 9천 3백만원)이고, 사용료 감면 규모는 연간 3천 8백만원(월 322만원)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구 분	내 역				사 업 명	사용자	심의 결과
	대 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사용료(천원)		
토지	1	67.1	222,790	5,570	G밸리 문화·복지센터 內 “IoT 기술지원센터” 운영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	적정
건물	1	357.46	1,324,786	33,120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다만, 서울시가 G밸리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IoT센터의 임대료 수입을 이미 산정하였는바, 여건 변화에 따라

사용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 한편, 국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서울시 행정재산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음.⁴⁾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4)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일부 공간(토지 4,619㎡, 건물 4,075㎡)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로 운영 중(2019.1.1.)이며, 문화재청 산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위해 임시 사무실과 창고(토지 42㎡)로 사용 중(2019.11.1.)임.

[참고자료 1 : 기술지원센터 임대료 감면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산

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고자료 2 : G밸리 IoT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G밸리 IoT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內 사물인터넷 기반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기본원칙) 협약 체결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 각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제2조(협약내용)

1. 서울시는 신축 중인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내에 진흥원(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이 사물인터넷 시험환경을 조성·운영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사용 허가)한다.
2.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의 구체적인 규모는 서울시와 진흥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감면하여 산정한다.
3.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기간은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4. 진흥원은 사용 허가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울시에 사용 허가기간 연장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진흥원은 서울시에서 신축 중인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내에 IoT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진흥원의 전문 기반, 기술 및 인력을 바탕으로 G밸리 內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6. 서울시와 진흥원은 G밸리 산업고도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SBA)과의 G밸리 IoT 기업지원 업무 연계 및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조(기타)

1.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2. 그 밖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장 박원순

원장 윤종록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ICT융합신산업본부장 전준수



서동록

전준수